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원칙)
- 제 3 조 (규정의 적용)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부패행위 금지 및 예외

- 제 5 조 (금지행위)
- 제 6 조 (식사, 선물, 접대)
- 제 7 조 (여행경비)
- 제 8 조 (기부금)
- 제 9 조 (강박상태에서 금전 지급)
- 제 10 조 (제 3 자 대리인)

제 3 장 반부패를 위한 실행조치

- 제 11 조 (주관부서의 역할)
- 제 12 조 (문서보관 및 감사)
- 제 13 조 (내부점검)
- 제 14 조 (교육)
- 제 15 조 (규정 변경)

제 4 장 신고 및 처벌

- 제 16 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 제 17 조 (처벌 및 인센티브)

부 칙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①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고 함)은 모든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규정 제15조(국제상거래)를 포함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이하 정의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및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회사 및 경영진은 고도의 윤리기준과 부패방지법을 준수하여 해외 사업을 수행하기로 약속하고 본 규정은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그러한 약속을 강조하고 회사의 국제 거래 및 해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 이라고 함)들이 준수해야 할 절차, 기준, 수칙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칙) ① 모든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아래 정의 참조)은 본 규정에 따라 부패방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② 본 규정에서 따라 모든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제3자를 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일체의 금지 행위(아래 정의 참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국제 거래 및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아래 정의 참조)을 얻거나 유도할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정부 공무원에게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의 제공을 재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본 규정에 언급된 사례는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모든 경우를 반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본 규정 위반 여부가 의심되거나 의문이 있는 임직원은 주관 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임직원은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 하며, 본 규정은 다음 Compliance 규정들과 함께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 윤리 규정
- 해외 이해 상충 규정
- 해외 선물 및 접대 규정
- 제보자 보호 규정
- 해외 협력 업체 규정

⑤ 이 규정과 다른 규정 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이 규정의 내용이 윤리 규정 또는 다른 규정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3조 (규정의 적용) ① 이 규정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이하 “회사” 라고 함), 자회사 및 해외 지사의 모든 임원, 직원 등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단기, 상시, 정기 또는 임시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② 회사와 거래관계 개시 시 또는 계약 체결 시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로 합의한 합작투자, 합작투자 파트너사, 협력업체 또는 제3자 대리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③ 이 규정의 일부 또는 부분적 적용이나 배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부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특별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규정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행료**”는 하위 외국공무원의 일상적인 정부 행위 수행을 촉진시키거나 원활하게 진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불하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말한다.
2. “**부정한 이득**”은 아래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모든 금전적인 혜택을 말하며, 직간접적으로 정부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유가물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공공계약의 수주, 규제 관련 승인의 획득, 계약의 취소 또는 계약적 의무의 면제 등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지하기 위해
 - 나. 정부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정부 승인 획득을 위하여
 - 다. 인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인허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정부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 라. 입찰, 경쟁자의 활동, 사업 기회 등과 관련한 기밀정보의 획득을 위하여
 - 마. 계약 및 입찰의 수주 및 해지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3. “**정부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임명직 또는 선출직에 상관없이 정부(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정부를 포함)의 입법, 행정 또는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나.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다. 정부가 납입자본금 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50 퍼센트(Percent)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둘 이상의 외국정부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였거나 누적된 출자가 50 퍼센트(Percent)를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라. 외국정부가 임원 또는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의 총 수의 50 퍼센트(Percent)를 초과하여 임면하거나 외국정부에게 중요 사업의 결정권 등 특별한 권리 또는 이익이 주어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마. 공적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바. 정당 직원 또는 공직 후보자
 - 사. 외국정부 또는 공적 국제기구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사람
4. “**유가물**”은 현금, 선물, 식사, 여행경비, 접대, 주식, 서비스 등 금액에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5. “**일상적인 정부 행위**”는 외국에서 어떤 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허가, 면허 또는 기타 공문을 얻고자 하는 행위, 비자나 작업 주문서와 같은 정부 서류 처리, 상품을 전국에 수송하기 위하여 계약 수행이나 점검과 관련된 경찰의 보호, 우편물 찾기 및 배달 또는 점검 일정을 제공하는 행위, 전화 서비스, 전기 및 수도 공급, 화물 적재 및 양륙 또는 품질 저하가 되는 부패성 생산물 또는 생필품의 보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행위를 말한다.

특정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에게 사업 또는 사업기회를 부여하거나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은 일상적인 정부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제3자 대리인”은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의 대정부 업무 (인가, 허가, 정부 승인 취득 등) 또는 사업의 개발, 수주, 수행 또는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거나 담당하도록 하는 에이전트(Agent), 컨설턴트(Consultant), 전문가 또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7. “주관부서”는 ESG 센터 산하의 글로벌 Compliance TF를 말한다.

8. “부패방지법”은 정부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금지하는 국내·외 법규로서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법(Bribery Act 2010) 등을 포함하여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에 적용 가능한 모든 법규를 말한다.

“금지행위”는 본 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압적인 행위, 부정한 행위, 부패한 행위, 방해 행위 등을 말한다.

9. “비즈니스 파트너”는 제조, 건설, 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 제3자 대리인, 합작투자 파트너도 포함한다.

10. “비즈니스 파트너 규정”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협력업체 규칙,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합작투자 규칙,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제3자 대리인 규칙을 말한다.

제 2 장 부패행위 금지 및 예외

제5조 (금지행위) ①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하거나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강압적 행위 : 다른 사람의 행위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
- 나. 부패한 행위 : 외국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하여 사업 또는 사업기회의 획득, 유지 등의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금전 기타 유가물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거나, 재가하는 행위
- 다. 부정한 행위 : 의무를 회피하거나 금전적, 비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속이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 라. 방해 행위 : (a) 고의로 제기된 혐의에 대한 회사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훼손, 은닉하거나 거짓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협박 또는 피해를 가하는 행위,
(b) 혐의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본인이 보관중이 정보에 대해 회사가 열람, 조사하는 것을 중대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

② 제3자 대리인을 통하여 본 조 제 1항에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6조 (식사, 선물, 접대) ① 외국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사, 선물 및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국공무원이 속한 국가의 법규를 포함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외국공무원이 속한 국가 또는 지역의 관습 또는 비즈니스(Business) 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식사, 선물 또는 접대는 소액이거나 합리적이어야 하며, 호화롭거나 사치스럽거나 관련 상황에 비추어 이례적인 수준이어서는 아니 된다.
4.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호의 또는 예의의 표시 또는 친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외국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유도하여 사업 또는 사업기회의 획득, 유지 등의 사업상 또는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부 공무원에 대한 식사, 선물 또는 접대와 관련하여 회사, 자회사 및 해외지사 내 정해진 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유사한 증빙과 함께 회사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제7조 (여행경비) ① 정부공무원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공무원이 속한 국가의 법규를 포함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정부공무원을 위한 여행경비를 지출하기 전에 적정 결재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공무원의 여행은 정부공무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정부공무원에 대한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회사, 자회사 및 해외지사 내 정해진 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유사한 증빙과 함께 회사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제8조 (기부금) ①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의 자금으로 외국정당 또는 정치기관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이하 “정치 기부금” 이라고 함) 또는 외국자선단체에 기부금(이하 “자선 기부금” 이라 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부 또는 후원의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 기부금 또는 자선 기부금을 제공하는 목적과 제공받는 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2. 후원 또는 기부행위는 해외부패방지법을 포함한 모든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사규

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자선 기부금이 금 100만원 이상을 초과하거나 외국공무원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자선 기부금이 제공되기 이전에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모든 정치 기부금은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외국공무원의 요청이 있거나, 외국공무원이 운영 또는 후원을 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정치 기부금 또는 자선 기부금과 관련하여 회사, 자회사 및 해외지사 내 정해진 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며, 영수증, 청구서, 명세서 또는 기타 유사한 증빙과 함께 회사의 장부 및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제9조 (강박상태에서의 금전 지급) 급행료의 지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임직원의 안전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또는 위험이 있으며 상기 집행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급행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신속하게 그 사유와 지급내역을 문서화하고 주관부서의 사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제3자 대리인) ① 비즈니스 파트너의 계약 체결 등 거래에 관여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 빈번하게 또는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는 모든 임직원 (이하 “비즈니스 파트너 담당 임직원”이라 함)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제3자 대리인 규칙에 따라 실사를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② 비즈니스 파트너와 계약 조건 등의 협상과 관련하여, 비즈니스 파트너 담당 임직원은 Compliance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등 비즈니스 파트너 규칙에 따른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비즈니스 파트너 담당 임직원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비즈니스 파트너가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했거나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할 염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비즈니스 파트너가 외국공무원에게 유가물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거나 정황상 유가물 지급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경우
 2. 정부공무원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경우
 3. 비즈니스 파트너가 외국공무원과 가족 또는 친인척관계에 있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4.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공하려는 용역이 이전에 종사한 사업범위와 다른 경우
 5. 비즈니스 파트너가 제공하는 용역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6.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 청구를 하는 경우
 7. 비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제3자를 경유한 지

급, 제3국에서의 지급 등)

8. 비즈니스 파트너가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서약서의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9. 비즈니스 파트너의 비용 및 회계기록의 투명성이 결여된 경우
10. 비즈니스 파트너의 주사무소 소재지, 주주 또는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제 3 장 반부패를 위한 실행조치

제11조 (주관부서의 역할) 주관부서는 임직원의 해외부패방지법 준수 및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갖는다.

1.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세부규칙 검토·제정·개폐 및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2. 해외부패방지법,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세부규칙에 대한 해석 및 자문 제공
3.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회에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지원 및 자문 제공
4. 제3자 대리인, 합작투자 파트너, 협력업체 및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 중인 자의 질의사항 검토 및 처리
5. 해외부패방지법,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세부규칙의 위반 또는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 및 향후 필요한 조치 제시
6. 해외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7. 해외부패방지법 변경사항 및 사례 공지

제12조 (문서보관 및 감사) ①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거래 및 회사의 자금 지출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문서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다.

②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감사는 내부감사규정 등 회사의 관련 사규에 따른다.

제13조 (내부점검) 주관부서는 이 규정과 이 규정의 세부규칙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 충분성 및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 주관부서는 외국공무원과 빈번하게 도는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내용은 해외부패방지법과 이 규정의 주요사항,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및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

③ 교육 실시 후 교육참가서를 사용하여 강사, 교육내용, 교육자료, 일시와 장소, 교육참가자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고, 교육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규정 변경) ① 주관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의 제·개정, 국내외 정부의 정책 변경, 회사의 관련 사규의 변경에 따라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세부규칙의 내용 추가, 삭

제 및 정정이 필요한 경우,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세부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이 규정 및 이 규정의 세부규칙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의 사규관리규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세부규칙의 별지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 장 신고 및 처벌

제16조 (보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① 임직원은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정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신의 상급자,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에 반드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본 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신 주관부서에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보고할 수도 있으며, 주관부서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회사, 자회사 또는 해외지사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정 위반 사실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사실을 보고한 임직원을 상대로 고용관계 또는 기타 어떠한 면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17조 (처벌 및 인센티브) 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상벌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받게 된다.

② 주관부서는 해외부패방지법 또는 이 규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였다고 평가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 또는 자회사에 건의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정을 회사 또는 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평가 및 포상에 대해서는 상벌규칙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년 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